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들은 사건개요를 게재한 것이므로 보도내용 원문, 피해구제보도문 등은 해당 사건이 수록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 · 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 제정 시 도입된 반론권 제도(당시 법률상의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 인)의 충격과 혼란을 원충하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실질은 ‘조정’에 해당)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언론중재제도는 도입 초창기에는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의 폐지 등에 따라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존립 근간에 대한 위협과 언론중재제도의 주요 청구권에 대한 위헌 시비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언론학자와 법률가,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언론피해구제 제도로 발전해왔다.

특히 2005년 1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확고해졌다. 그간 정간물법, 방송법, 민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하나의 법으로 단일화되었고, 종전에 사용하던 ‘중재’라는 용어를 본연의 의미에 맞게 ‘조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별도로 ‘중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조정 · 중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등 언론조정 ·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09년 8월에는 개정 언론중재법

의 시행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및 언론사 닷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 대해서도 언론조정 · 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올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느덧 언론중재제도 시행 및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이 된 해이다. 이에 언론조정 · 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간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사건들을 회고해보려 한다.

그러나 창립 30주년 특집호인 이번 2011년 봄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위원회 30년 역사에서 언론조정 · 중재제도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시기였던 2000년대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과 관련한 조정 · 중재 사례 10개로 제한하여 수록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1981년부터 2009년까지 100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언론조정중재영문사례집을 올해 중 발행할 예정이므로, 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사례는 향후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1. 제2연평해전(2차 서해교전)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79 180
청구명 : 조정 · 반론청구
신청인 : (주)문화방송
피신청인 : 월간조선사
중재부 : 서울재중재부
접수일 : 2002.8.2
처리결과 : 각불성립결정

신청인 방송사가 제2연평해전(2차 서해교전)의 발생원인을 북한 의 도발이 아니라 연평도 어민들의 월선조업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해군의 잘못을 추궁하는 인상의 보도를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 전날인 6월 29일에 북측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잠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였고,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 교전으로 운영하소령(당시대위, 1계급추서) 등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1999년 6월 15일 최초의 서해교전에 이어 '제2차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2007년 6월 28일에는 당시 침몰한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고속함 1번함이 운영하함으로 명명되어 진수되었으며, 2009년 6월 2일 실전배치되었다.

■ **조정개요** : 월간조선은 2002년 8월호 추적 버림받은 MBC 뉴스-서해도발에 대한 오보, 왜곡 계속... 여론과 사실로부터 고립되다. 여론과 사실로부터 버림받은 MBC 뉴스' 제목의 기사에서 월간조선이 MBC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MBC가 서해교전 사태가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우리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과 이에 대한 해군의 통제 부재에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흥분한 여론은 MBC에 반역적 보도행태라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뉴스시청률은 KBS를 크게 밀돌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MBC는 북한군의 선제공격은 명백한 잘못이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일부 어선들의 무리한 꽃게잡이 월선조업이 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으며 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사실 등이 보도의 골간이라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2002 서울중재179)와 반론보도청구(2002 서울중재180)를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월간조선은 일부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해당보도가 사실이므로 피신청인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을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월간조선은 2002년 12월호에 '반론보도문' 제목으로 "(전략) MBC 뉴스데스크는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전투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개전의 한 원인을 제공한 우리 어선

의 꽃게잡이 월선 조업에 대하여도 행정·군사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에 반해 월간조선은 월선조업이 이번 서해교전의 한 원인을 이루고 있다는 군관계자 및 연평도 주민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중략) 월간조선이 인용한 2002. 7. 4자 시청률만을 보더라도 다른 시청률 조사기관인 NIELSEN MIDEA RESEARCH에서는 MBC 뉴스데스크 18%, KBS 9시 뉴스 18.7%로 대등하게 시청률을 집계하고 있어 MBC의 서해교전 관련 보도 논조가 뉴스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월간조선이 인용하고 있는 2002. 7. 4자분당 시청률 변화표를 보면 연평도 관련 보도를 할 당시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상승하거나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55
 청구명 : 반론청구
 신청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3. 2. 21.
 처리결과 : 기각(개별적 연관성 없음)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건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고 보도해
 전체 정신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 **사건개요** :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형 지하철 화재 참사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화재의 원인은 지적장에 2급 판정을 받은 50대 남자의 방화로 인한 것이었다. 제1079호 열차에 탑승한 방화범이 열차가 대구 중앙로역에 진입한 순간,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순식간에 불길기 번졌다. 그러나 1079호 열차는 정차중이어서 승객들 대부분이 대피한 반면, 불길이 반대편 선로로 진입하던 제1080호 열차로 옮겨 붙어 이 열차의 승객들 중 대부분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조정개요** : KBS는 사건 당일 6차례의 뉴스속보를 통

해 경찰은 방화용의자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50대 정신질환자로 평소 신병을 비판해 스스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용의자 김씨는 정신지체나 정신질환과는 다른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을 뿐임에도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장애자’라고 보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편견을 심화시켰으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재부는 보도내용에 신청인 단체가 직접 언급된 바 없고, 용의자 김씨를 ‘정신질환자’, ‘지체장애자’ 등으로 표현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한편,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부상자 이모씨를 사망자로 잘못 분류해 영안실로 옮기려 했다가 이씨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계속하자 살아났다는 동아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03서울중재58),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본부 간부인 신청인들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유가족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초저녁부터 ‘폭탄주’를 마시며 큰 웃음소리마저 내는 술판을 벌였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2003서울중재67)이 있었다.

3. 쓰레기만두 파동 관련 사례

사건번호: 2004서울중재313

청구명: 정정청구

신청인: 이○○ 외 6인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04. 7. 6.

처리결과: 조정성립(PR보도)

신청인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두 재료를 만들어 납품해 온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사건개요**: 2004년 6월 4일 경찰청에서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 폐 우물로 탈염·세척하여 전국 25개 유명 식품회사 등에 만두, 야채

빵의 재료로 납품해 온 약 6명 업체를 입건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토대로 방송에서는 6월 6일 저녁부터, 신문은 6월 7일부터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고, 만두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25개 만두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 6월 10일 13개 불량만두 제조업체와 상품명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만두업계에서는 경찰 발표가 과장됐음을 주장, 식약청에서 6월 15일 만두업체에 대한 줄속 조사를 시인하고 일부 업체에 대한 무혐의 발표함으로써 만두파동은 일단락되었다.

■ **조정개요**: KBS는 2004년 6월 6일자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두 재료를 만들어 온 식품업체들이 붙잡혔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이 납품한 재료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다량 검출됐으며, 시중에서 팔리는 완제품 만두속 재료로 인근 단무지 공장에서 쓰레기로 버린 썩거나 상한 무그리고 무찌꺼지가 사용됐고, 쓰레기 단무지를 씻는 물도 오염된 지하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6월 7일자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4월까지 불량만두속 재료가 납품된 걸 감안하면 유통기한이 9개월인 만두 재료와 냉동만두가 아직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고, 6월 11일 및 13일자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불량단무지 제조업체에 대한 미약한 행정처분 등 만두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6개월마다 공인기관에서 자투리 단무지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았고, 1차 탈염에서 사용한 물은 식약청 46개 검사항목 중 ‘탁도’에서만 부적합했고 2차 탈염과정에서는 식수로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며, 만두 제조공정에 살균·멸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에서는 세균이 나오지 않고, 방송에서 만두소 제조과정으로 잘못 보도한 화면은 상품 가치가 없는 단무지를 폐기처리하는 과정이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KBS는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음을 이해하고, 양당사자는

당초 만두소로 쓰였던 단무지 자투리는 정상적인 식품이었다는 단무지업체의 주장을 포함해 정상적인 단무지 생산 과정을 보도하면서 해당 업체가 종업원 위생교육과 제조공정 청결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등 단무지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의 PR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번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해 단무지업체 및 만두업체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9개 매체를 상대로 23건의 청구를 제기하였다(2004 서울중재313~318, 2004 서울중재320~328, 2004 서울중재336~343). 이들 사건 대부분은 「단무지 업체 정상화 “한심하고 드세요”」, 「만두제품 99.6% 안전성 검증」 등의 제목으로 단무지와 만두가 위생상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거나 심리전에 보도문을 게재하여 취하되었다.

4. 승례문 화재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53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

신청인이 승례문 화재 발생 사실을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에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승례문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5시간 만에 누각을 받치는 석축 부분만 남긴 채 승례문이 전소한 사건이다. 처음엔 전기시설의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라고 알려졌으나 방화범이 자신의 토지보상문제로 불만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승례문 복원작업이 착수되었고, 2011년 2월까지 약 40% 정도 복원이 진행된 상태로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 **조정개요** : 경향신문은 2008년 2월 12일자 「KBS ‘승례문 화재’ 특집 보도’ 항의 빗발」 제목의 기사에서 MBC, SBS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중계차를 연결

해 승례문 화재 사건 뉴스 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낸 것에 반하여, 공영방송인 KBS는 1·2TV 모두 정규 편성된 설날 특선 영화를 방송한 이후인 밤 12시 57분부터 풀편성이 이뤄졌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비록 풀편성에 앞서 승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속보자막, 3분 현장중계차 연결 등이 있었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승례문 전소 위기에도 특선 영화를 계속 방영하는 등 특장 보도로 K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국보 1호가 타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영화나 틀고 있다니 실망이다’, ‘국가 재난 방송사가 뒷북 보도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등의 의견이 줄을 잇는 등 시청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KBS는 9시 메인 뉴스 말미에 승례문 화재에 대한 속보를 내보낸 이후 1시간 간격으로 3차례 현장중계차 연결 뉴스 속보를 방송하였고, MBC, SBS와 마찬가지로 밤 12시 57분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인 설날 특선 영화 방영을 중단하고 뉴스 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냈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KBS가 3차례 현장중계차 연결 속보를 방송했다는 부분은 원 보도문에 KBS 측 반론으로 포함된 내용이므로 제외하고, 밤 12시 57분부터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 속보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디지털타임스는 「국보 1호보다 영화가 중요하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향신문과 동일한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KBS는 정정보도를 청구(2008 서울 조정54)하였다가 심리전 디지털타임스가 정정보도를 게재하자 취하한 사건이 있었다.

5. 태안 기름유출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73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보건복지부
피신청인 : MBC-TV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8. 3.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

태안 기름유출피해지역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하던 주민이 원유의 휘발성에 노출되어 실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크레인이 충돌하여 총 1만 2547kl에 이르는 원유가 유출된 사건으로 한국해상의 기름유출 사고 가운데 최악의 사건이었다.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짙은 기름띠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태안과 그 인근 지역의 양식장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안의 기름띠어를 제거하는데 동참하였고, 생계의 터전을 복구하려는 주민들의 처절한 노력 덕분에 태안지역은 현재 청정해안의 옛모습을 되찾았다.

■ **조장개요** : MBC는 2008년 2월 19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신음하는 주민들, 두통·구토·실명」 제목의 보도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향후 발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태안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장 걸로 드러나는 심각한 이상 증상에 대해 보도하였다. 특히 상당수 주민들이 기름냄새 등으로 인해 두통에 어지럼, 피부질환, 특히 눈에 이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하루 7시간씩 의매일 기름 제거 작업을 했던 70대 A 할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멀쩡하던 두 눈이 따끔거리더니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해 결국 얼마 전 한쪽 눈을 실명을 하였고, 기름 제거 작업장을 다닌 후부터 눈이 아주 안 보인다. 70대 B 할머니는 기름 유출 후 400시간이 넘도록 원유의 강한 휘발 성분에 눈이 그대로 노출돼 왔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A 할머니는 기름 유출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이미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으로 인해 왼쪽 눈을 실명한 것이므로 방제 작업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BC의 보도로 인해 주민들이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실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심리 결과, MBC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해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 태안 주민의 실명은 기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기름 유출 사건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신청인의

부친이 태안 기름 유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대회에서 분신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유족들이 한국일보와 뉴시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2008 서울 조정 43, 2008 서울 조정 44)하였다가 심리 전 일정액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인터넷 사진 삭제등의 조치가 이뤄진 후 취하한 사건도 있었다.

6. 광우병 논란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123
 청구명 :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 농림수산식품부
 피신청인 : MBC-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8. 5. 6
 처리결과 : 직권결정(정정 및 반론 - 피신청인 이의신청)

미국 여성 '이레사 빈슨' 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6년 '30개월 미만인 살코기' 라는 조건으로 재개되었고,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소는 빼와 내장을 포함, 30개월 미만 소는 대부분의 특정위험부위(SRM)를 포함(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SRM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의 조건을 대폭적으로 낮추면서, 이른바 '광우병 논란' 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문화방송의 PD수첩 보도로 인해 논란이 크게 확대되었고, 청계천 등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린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 **조장개요** : MBC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축산농가에서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저지른 소들에게 강한 자극을 줘 일시적으로 일으켜 세

우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② 광우병이 예방과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고, 끓여먹거나 익혀먹어도 감염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이라고 언급한 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의사망원인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즉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③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으며,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적이 있는지, 보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하였다. ④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현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되고, 30개월 미만이라는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이 폐지됨으로 인해 개월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이 높아지며,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총 7개의 쟁점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는데, MBC의 보도내용 ①과 ②에 대해서는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고,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미국 농업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의사망원인도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또한 보도내용 ③과 ④에 대해서는 협상체결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7년 미국 현지 도축장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고,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주장을 정정 및 반론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MBC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 법원으로 자동으로 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MBC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주장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것을 판결하였다.

형사적으로는 검찰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제작진에 대해 기소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1심에서는 보도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비록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 현대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다.

한편,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청문회 장면과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청구(2008서울조정136)한 사건도 있었다. 심리 결과, 심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7. 박연차 정관계로비 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김무성

피신청인 : (주)일요서울신문사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9. 2. 2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보도 및 사과)

신청인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소문에 근거해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소위 '박연차 리스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2005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종증권 매매와 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박연차 회장의 휴캠프 인수 과정 등을 조사하던 중 수많은 정치인들과 유력인사들이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해온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특히 2008년 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세종캐피탈 흥기옥 사장과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청탁과 뇌물을 수수, 세종캐피탈이 농협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져 구속되었고,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이 박연차 회장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서거하였다.

■ **조정개요** : 피신청인 일요서울은 2009년 1월 4일자 「친박측, ‘정치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제목의 기사 및 2009년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장고’ 제목의 기사에서 김무성 의원을 둘러싼 음해성 소문이 돌면서 김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고 보도하면서, 김 의원이 같은 동향인 부산 출신의 태광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부산 정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 현직 의원 2~3명이 더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 회장으로 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사실도 없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요서울이 사실 확인 없이 소문에 근거해 보도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일요서울은 김 의원의 정정청구부분의 주장 전부를 수용하고 아울러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독자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박연차 회장이 매입한 부지에 고도제한 완화를 허가해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01), 최철국 의원이 박연차 회장이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았으며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06, 2009서울중재37), 김학송 의원이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곧 소환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17), 김무성 의원이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받은 자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37, 2009부산조정3), 전 경찰총장 어청수가 재직 당시 박연차 회장에게 거액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

외됐다고 보도했으나,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21), 전국정원 2차장인 신청인이 박연차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신청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정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223, 2009서울조정250), 김학송 의원이 박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소환통보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정정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248) 등이 있었다.

8. 미네르바 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박대성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신동아)

중재부 : 서울지법중재부

접수일 : 2009. 4. 13.

처리결과 : 중재회해결정(사과문 게재)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사람이 K씨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짜미네르바이다.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7월부터 다음 아고라게시판에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리먼브라더스파산, 환율폭등 등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을 게재하였고, 이러한 예측이 사실과 맞아 떨어지면서 유명해졌다. 이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믿으면서 영향력이 커졌고, 50대 초반의 해외 거주 경험 있는 전직 증권맨 ‘K씨가 주축이 된 7인의 그룹’이라는 등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확대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2008년 11월 절필을 선언했으나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내용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로 2009년 1월 구속당했다가 2009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다가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항소를 취소했다.

■ **중재개요** :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인터넷 경제대

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로 『제목』의 기사에서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중략) 나는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완전히 절필하겠다”는 등의 미네르바 K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박대성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방에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80편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고, 그 글 중에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 폭등 및 경기 침체 예측으로 크게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는 신동아가 인터뷰한 K씨가 아니라 자신이라며 2009년 3월 19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중재절차 결정에 따르기로 중재합의하였고, 중재절차 진행 중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심심한 위와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신동아가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는 화해함에 따라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대로 결정(중재화해결정)하였다.

한편, 나라사랑 청년회에서 ‘미네르바’ 박대성이 신청인 단체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 확인됐다는 중앙일보 보도(2009년 1월 10일자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 제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중재신청(2009서울중재8)한 사건도 있었다. 중재부는 신청인 단체에서 활동한 박대성 씨는 미네르바 박대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일 뿐 무관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중재 결정하였다.

9. 신종 인플루엔자 A (신종플루)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2, 483

청구명 : 각정정청구

신청인 : OO초등학교

피신청인 : (주) 동아일보사, (주) 동아닷컴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9. 10. 26.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정)

신종플루로 사망한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신청인 학교가 같은 반에 다른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처음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돼 2010년 8월까지 1만 8천여 명이 사망함으로써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동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76만여 명이 감염, 이 중 270여 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인 신종플루는 아직까지 그 전파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정개요** : 동아일보는 2009년 10월 23일자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제목의 기사에서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신종플루 간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10월 16일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9월 25일 체온 상승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A군은 단순한 감기 기운이라는 말에 귀가했다가 열이 심해져 26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신종플루 간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28일에는 등교를 하였으나 열이 심해 있다는 학교측의 연락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입원해 정밀검사한 결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A군이 신종플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하루 전인 9월 24일에는 같은 반 친구가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만 미리 알려주었다면 입원시킬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고 좀 더 철저한 치료를 요구했을 텐데...” 라는 A군의 부모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동아닷컴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이에 대해 OO초등학교는 9월 25일 오전 발열로 인해 A군을 귀가 조치한 이후 A군은 등교를 하지 않았고, 학교 측은 A군과 같은 반 어린이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은 9월 28일 오후에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A군은 이미 2회의 신종플루 간이검사에서 음성이나왔고 폐렴 치료를 받는다고 학교에 통보를 하였기에 학교 측에서는 A

군의 상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병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군이 반에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양 당사자는 신청인 학교가 9월 25일 A군의 발열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시켰으며 그 이후 A군은 등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정보도와 A군의 같은 반 친구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정밀 검사까 아닌 간이 검사 결과였기 때문에 학교 측이 A군의 학부모에게 미리 같은 반 친구가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확진 검사 결과를 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반론 보도를 함께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 권한을 악용해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반론 보도를 청구(2009서울조정414)하였으나, 중재부에서는 신청인이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한 사례가 있다.

10.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2010서울조정886
 청구명: 정정청구
 신청인: 해군본부
 피신청인: (주) 동아일보사
 중재부: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2010. 5. 11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침몰 원인에 대해 초기에는 어뢰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했으나, 외국인 전문조사팀을 포함한 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고,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3월 30일에는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고, 4월 2일에는 저인망 어선 '금양98호'가 침몰하면서 탑승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침몰한 천안함 함미와 함수는 각각 4월 15일, 24일에 인양되었다.

■ **조정개요** : 동아일보는 2010년 3월 31일자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제목의 기사에서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의 통보를 받은 해경이 당시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501함과 1002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으나, 501함의 경우, 승조원의 구조를 위해 침몰해 가는 천안함에 가까이 가려고 했으나 해군이 제동을 걸었고 구조대원들이 탄 고속단정(립 보트)이 501함과 1002함에 각 2척이 있어 모두 4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2척만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해경과 수차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501함보다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군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경 501함이 침몰하던 천안함과 서로 부딪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구조 활동을 위해 직접 접근이 아닌 501함이 보유한 2척의 립 보트를 요청한 것이고, 1002함은 구조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1002함이 보유한 립 보트 2척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해경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고 구조 활동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해군은 해경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동아일보는 보도에 앞서 해군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원 보도문에 게재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결국 해군이 주장하는 취지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미 충분한 반론이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합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중재부는 원 보도문에 반영된 해군 측의 주장을 제외하고 해군과 해경이 긴밀한 협조로 58명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반론 보도문을 동아일보가 게재하라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을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한편, UDT동지회 소속대원이 고한준희 준위와 함께 제3의 지점에서 대형 구조물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수색작업을 벌인 곳은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부근이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41),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늦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4),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고 최원일 함장 및 부함장은 구조된 직후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5), 침몰 천안함 함미를 민간 어선이 발견한 것과 관련해 침몰장비를 갖춘 해군 함정이 낚은 어선보다 못하다고 보도했으나, 해군 함정은 잠수함 등 수중이 동물의 탐색에 적합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7), 천안함 생존장병의 기자회견에 대해 '생존장병들이 입을 맞추고 나왔다', '해군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천안함 유족들의 발언을 게재해 해군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8), 천안함 함미 인양 과정에서 해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함미를 몰래 수중 이동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적절한 보고 과정 후 이동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9), 해군이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응하는 대양해군에 집착해 대북 전력보강에는 소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90),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중요 사실들에 대해 해군의 의도적 왜곡, 은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91), 함참의장인 신청인이 천안함 침몰 당시 술에 취해 통제실을 비웠으나 정상지휘했던 것처럼 문서조작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1036), 천안함 관련 취재자 백령도를 방문한 외신기자들이 백령도의 한 부대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국정원 안보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1212, 1213) 등이 있었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제목이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언론사 책임 없어**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009년 1월 29일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으로 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2차, 3차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나, 베트남에 수출한 분유는 1차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남양유업의 분유는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소송에서 이례적으로 2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1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차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40일 뒤 수입된 같은 물질에서 멜라민이 나왔고, 남양유업이 식약청 검사 하루 전에 1차 수입분을 모두 소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유가 멜라민 함유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11. 1. 19. 선고

사 건: 2009나98623 손해배상(기)

2009나98630(병합) 정정보도등

원고, 피항소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파이낸셜뉴스신문주식회사외 2인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 2009가합2133(병합) 판결

변론종결 : 2010. 9. 1.

판결선고 : 2011.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피고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패소부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들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각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파이낸셜뉴스 제1면의 위치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와 동시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신문에 게시하라.

나. 위 기간안에 위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뉴질랜드의 타투아(Tatua)사(社)로부터 분유의 원료인 아포락토펜을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1차 수입분 90kg 중 38.4kg을 2008. 9.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분유 108,309캔(이하 이 사건 분유 라고 한다)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그 나머자인 51.6kg은 2008. 9. 5. 및 2008. 9. 29. 입자화 실험 등 실험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3. 이 사건 분유 중 52,920 캔을 베트남에 수출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09. 1. 29. 피고 윤OO이 작성하고, 피고 노OO이 편집한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파문」 및 「남양유업 폐기제품 수출도덕성 도마에」 제목의 기사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음 날 파이낸셜뉴스 신문에 기사로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베트남에 수출한 분유는 멜라민 함유(또는 검출) 제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수출한 분유가 ‘멜라민 분유’ 또는 ‘폐기제품 또는 멜라민 함유(또는 검출) 의심분유’ 처럼 보도를 한 것은 허위 보도이므로 피고회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또한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과 본문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의 요지는 원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어 국내에서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분유에 사용된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차 수입분 생산일로부터 약 40일 후 생산된 2차 수입분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 관계 당국에서는 2008. 9. 17. 경 멜라민 관련 수입식품 전수 검사 조치를 시행하고, 같은 달 24. 경부터 분유 등 함유 중국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분유를 제조한 원고로서는 당시 남아 있던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1.6kg 중 일부라도 보관하여 식약청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검사에 대비하거나 멜라민 함유 여부를 공인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 하루 전(원고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이러한 검사가 행해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이례적으로 고가의 아포락토페린을 11.6kg(1일 동안 실험용으로 전부 사용하기에는 과다한 분량으로 보인다) 전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미생물 필터링 실험(10kg)과 용해도 실험(1.6kg)에 모두 사용하여 소진시켜 버린 사실, 1차 수입

분 아포락토페린 생산자인 타투아사에서 자사의 락토페린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1차 수입분 수입일로부터 불과 4개월 경과한 시점인 사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2차 수입분은 물론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3차 수입분에 대하여도 압류 조치 후 폐기를 명한 사실(이는 2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이상 3차 수입분에도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 중에는, ‘다행스럽게 완제품인 아이엠마터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거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와 같은 이 사건 분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이 자체 조사나 식약청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출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수출을 승인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1회, 외부기관에서 2회 검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베트남 수입업체는 물론 베트남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원고측의 반론도 함께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식약청이 2008. 10. 2. 이 사건 분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멜라민 불검출로 나온 사실 및 원고가 2008. 12. 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분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온 사실 등이 이 사건 분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 함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목 가운데 ‘멜라민 분유’ 내지 ‘폐기 제품’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고의 대표이사 박건호가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건 분유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실제 이 사건 분유는 전량 베트남, 홍콩 등 외국에 수출되었고, 국내에서는 단 1캔도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멜라민 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어 국내 유통이 중단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완제품인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유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차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 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거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기사는 멜라민 함유가의 의심되어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기업의 도덕성 내지 차별적인 이중기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기사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2]

대법원, 명예훼손적 내용의 외부칼럼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상당성 인정되면 언론사의 위법성은 조각

외부칼럼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칼럼 기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칼럼 내용에 공적 기능이 있고, 일부 사실과 부합한 점, 칼럼 투고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비취볼 때 언론사로서는 칼럼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사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1월 1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칼럼 기고자 신모씨와 이를 게재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는 '경실련에서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는데 이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김씨가 자기 이름으로 출간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며 경실련이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등에 있다는 내용의 신씨의 기고문을 조선일보 2006년 7월 10일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출판에 상당한 기여를 해 공동 편자로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씨의 기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신씨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은 모두 "신씨와 조선일보는 연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고문 내용이 경실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타개책을 제시하는 공적 기능이 있고, 책자 출간 과정에서 경실련 내부에서 조차 출간 명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점, 신씨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신씨의 지위 등의 사정을 비취보면 조선일보로서는 기고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

2011. 1. 13. 선고

사 건 : 2008다60971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 김○○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신○○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판결

판결 선고 : 2011. 1. 13.

주 문:

1.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주식회사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신OO의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신OO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 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적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6. 2. 2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선일보는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의 시론란에 피고 신OO가 투고한 이 사건 기고문을 실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기고문 중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하려는데 그 작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일도 있다. 밖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원고실명제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교수는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표현’ 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원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책을 내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그대로 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태도를 ‘도덕적 타락’이라고 논평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기고문은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로서 공익적 성격이 있고,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대학의 총장인 원고가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저자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피고 조선일보가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

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불 태 원고 및 피고 신OO가 속해 있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이라고 한다)가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정치적 시민운동화 등에 있다고 보고 그 타 개혁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리더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그 주된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경실련에서 이 사건 책자의 출간을 기획하고, 섭외하여 예산을 획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책자의 주요 부분의 원고(原稿)는 원고 등 3인의 공동 편자가 아니라 피고 신OO 등이 중국, 일본 등의 현지를 답사하여 집필한 것임에도 이 사건 책자에는 그들을 단지 '현지조사자'라고만 표기하고 원고 등 3인을 공동 편자로 하여 출간되었다. 그 때문에 당시 경실련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 책자를 경실련 명의로 출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피고 신OO는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시종 관여하고 일본 부분을 직접 조사하여 집필하였으며, 이 사건 기고문을 투고할 당시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책자는 1995년경 출간이 기획되어 1996. 5.경 발행되었는데, 원고는 1995. 4. 22. 민주당에 입당하여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1995. 8. 18. 캐나다로 출국한 후 1996. 2. 9. 입국하였다가 1996. 3. 23. 다시 출국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책자의 출간과정에서 그 출간명의를 둘러싼 논란, 피고 신OO가 수행한 역할과 관련 정도, 이 사건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위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책자의 출간작업이 진행될 무렵 원고의 출입국 내역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선일보로서는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조선일보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조선일보의 나머지 상고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 신OO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신OO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일방적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싸움을 하다 사망했다는 수사기판의 잘못된 발표에 근거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뤄진 경우, 법원이 피해자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敬愛)와 추모(追慕)의 정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여 수사기판을 상대로 한 피해자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원 고: 고오노 나츠코(甲野夏子) 외 2명
- 피 고: 에히메 현(愛媛縣)
동대표자 지사가도모리유키(加戸守行)
- 대상사건: 마츠야마지법 2009(7)제656호
- 사건명: 사죄광고등 청구사건
- 연월일등: 2010. 4. 14 민사제1부 판결
- 재판내용: 일부 인용 · 확정
- 참조조문: 민법709조 · 710조 · 723조, 국가배상법 1조1항 · 4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1만엔 및 이에 대한 2007년 8월 25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원고들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1.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죄광고를, 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에히메판), 마이니치신문(에히메판), 요미우리신문(에히메판)의 각 조간사회면에 제목, 기명(記名) 및 수신인명은 각 14포인트 활자로, 다른 나머지 부분은 각 8포인트 활자로, 각 1회씩 게재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 위자료 200만엔 및 변호사비용 30만엔을 지급하라.

2. 사실의 개요

본건은, 사망한 오토야마 하루오(乙山春男)의 유족인 원고들이, 하루오가 소외 헤이가와타로(三川太郎)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해 부상당한 후 사망했음에도 에히메현 C경찰서(이하「C경찰서」로 한다)가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잘못된 발표를 했으며, 이러한 잘못된 경찰발표에 근거하여 신문 각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하루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들의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이라는 인격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 피고를 상대로 국가

배상법 1조 1항에 근거하여 각자위자료 200만원 및 변호사비용 30만원의 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불과 함께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1. 전제사실 (특히 증거로 제시된 사실이와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 고오노 나츠코(甲野夏子)는 하루오의 모친, 원고 오토야마 아키오(乙山秋男)와 오토야마 후유코(乙山冬子)는 하루오의 조부, 조모이다.

(2) 하루오(1988년생)는 2006년 8월 11일 마츠야마(松山)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나와 점포 앞(이하 「제1현장」으로 한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마침 친구들과 함께 가라오케에서 나온 헤이가와타로부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가 붙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헤이가와타로가 하루오의 머리칼을 잡는가 하면 하루오는 헤이가와타로의 턱 근처를 구타했다.

헤이가와타로는 도망가려는 하루오를 붙잡아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라오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하천부지의 제방둑(이하 「제2현장」으로 한다)으로 끌고 가, 오후 6시 50분경부터 앉은 상태의 하루오의 안면을 발로 차 콘크리트 위에 넘어뜨려 실신케 하고 이어 복부를 발뒤꿈치로 가격한 후 제방둑 위에서 약 1~2m 아래수로(水路)로 밀어 떨어뜨렸다.

하루오는 헤이가와타로에 의한 제2현장에서의 폭행으로 12지장천공(指腸穿孔) 등의 상해를 입고 8월 22일 오전 10시 19분 호흡부전(不遂)에 의해 사망했다(이하 「본건상해치사사건」으로 한다).

(3) C경찰서는 8월 11일 원고인 하루오의 조부 아키오의 통보에 따라 상해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했는데, 하루오가 동월 22일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23일 보도기관(현경찰서 기자클럽 12개사)에 보도자료(이하 「본건 보도자료」로 한다)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2006년 8월 11일 피의자와사자(死者)

는 각각 친구들과 함께 마츠야마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놀던 중 눈이 마주치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발전했으며, 그 결과 사자가 부상을 입고 입원 가료중 전기 일시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사건 개요가 기재되어 있었다.

(4) 본건 보도자료 배포 후 C경찰서의 부서장은 보도 기자들의 개별적인 전화취재와 방문취재 과정에서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다이만(たいまん·1대1의 싸움을 뜻하는 속어)과 같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이하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및 부서장에 의한 본건상해치사사건에 관한 취재대응을 합쳐 「본건홍보대응」으로 한다).

(5) 8월 24일자 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및 요미우리신문에는 본건상해치사사건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재되었다(이하 「본건보도」로 한다).

(가) 에히메신문

싸움으로 2 사망, 33을 상해치사 혐의 수사

11일 저녁 마츠야마시의 오노가와(小野川) 하천부지에서 고교생끼리 싸워 P군(郡) 현립고(縣立高) 2년 A소년(16)이 22일 복막염과 호흡부전(不遂)으로 사망했다. C경찰서는 23일 이미 상해 혐의로 체포된 마츠야마시의 사립고 3년 B소년(18)을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 수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두 소년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각각 3~4명의 친구들과 가라오케에서 유희중 눈이 마주치면서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가 붙어 근처의 오노가와에서 1대1의 싸움으로 발전, B소년은 A소년의 복부를 발로 차서 상해를 입힌 혐의(이하 생략).

(나) 아사히신문

남자고교생이 싸움으로 사망, 타교생에게 복부 견어치여

마츠야마시에 거주하는 사립고교 3년의 남자학생(18)과의 싸움에서 복부를 차여 치료를 받던 Q정(町) 거

주 현립고 2년의 남자학생(16)이 22일 마츠야마시내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C경찰서는 상해치사사건으로 상해를 입힌 남자학생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할 방침.

조사결과 두 사람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각각 수명의 친구들과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놀다가 점포앞에서 시비가 붙은 후 수백m 떨어진 가와하라(河原)에서 싸움을 했다고 한다.

(다) 마이니치신문

고교생끼리 싸움 1명 사망

에히메현경찰 C경찰서는 23일 마츠야마시내의 가라오케앞에서 다른 고교생과 시비 끝에 싸움까지 벌여 복부등을 구타당한 에히메현 Q정(町)의 현립고 2년생(16)이 22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C경찰서는 마츠야마시내의 사립고 3년생인 소년(18)을 상해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한 후 석방했으나, 혐의를 상해치사혐의로 바꿔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사망한 2년생과 소년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각각 3~4명의 고교생 그룹으로 가라오케에 갔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두 학생은 수백m 떨어진 가와하라(河原)로 이동하여 치고받는 싸움을 했다. (이하 생략)

(라) 요미우리신문

가와하라에서 싸움 고2 사망, 상대방인 고3년생 임의 청구키로

마츠야마시내의 하천부지에서 11일 Q정(町)의 현립고 2년의 남자학생(16)과 마츠야마시의 사립고 3년의 남자학생(18)이 싸움을 벌여, 2학년 학생이 복부에 상해를 입고 시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2일 복막염 등으로 사망. C경찰서는 상해치사사건으로 3학년 학생으로부터 임의로 사정을 청취할 방침.

조사결과 두 사람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언쟁이 붙어 근처의 하천부지에서 치고받는 싸움을 벌였다. 3학년 학생

이 2학년 학생의 복부등을 걷어찼다고 한다. (이하 생략)

2 쟁점 및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건홍보대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쟁점1)

1) 원고들의 주장

(가) 하루오는 제2현장에서 헤이가와타로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C경찰서는 보도기관에 대해 본건상해치사사건 발표를 한 2006년 8월 23일 시점에서 이미 동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오가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본건보도자료를 보도기관에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장은 보도기자들에게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다이만(たいまん)’ 이라고 설명, 사실과 다른 경찰발표를 했다.

(나) C경찰서의 잘못된 본건홍보대응에 의해 신문가사는 사실과 다르게 제2현장에서 치고받는 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했으며, 그 결과 사자의 명예훼손과 함께 유족인 원고들의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을 현저하게 침해했으므로 C경찰서는 과실에 의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C경찰서는 수사결과로서 제1, 제2현장에서의 사실관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사실관계를 일련의 사상(事象)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일련의 과정속에서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 본건상해치사사건을 두 소년의 싸움에 기인한 상해치사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며, 싸움을 한 결과 부상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의 기재는 수사에 의해 얻어진 객관적 사실에 틀림이 없다.

(나) 부서장이 다이만(たいまん)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본건상해치사사건이 집단폭행 또는 린치와 같은 구도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대1’ 상황이었다고 이해

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치고받는 싸움’으로 보도되도록 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표현으로 보도될 것이라는 예견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 따라서 본건 보도에 의해 하루오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건 홍보대응에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

(2) 사죄광고의 필요성 (쟁점2)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현재까지도 본건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올바른 것이며, 하루오는 싸움 끝에 사망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므로 본건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죄광고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법 외에는 하루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

(나) C경찰서에 의한 본건 홍보대응은 원고 하루오의 조부 아키오가 수사담당자에게 난폭한 항의를 한데 대해 반감을 갖게 되어 유래된 것으로, 수사가 중립·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탈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높고,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싸움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하루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사죄문의 게재가 필요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본건 홍보대응의 과오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근거하여 에히메현 경찰본부의 홍보담당자들이 2007년 2월 7일 원고인 아키오와 대리인 변호사 외 1명에게, 부서장이 홍보대응의 일부에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도기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수사결과와 보도의 내용에 착오를 가져오게 한 데 대해 사죄했다.

또한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상기 조사에 근거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도관계자들에게 공표하는 동시에 부서장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죄하였음을 설명했는데 각 언론사들은 그 내용을 신문에 게재

했다.

이와 같은 경위를 감안할 때 하루오 및 유족에 대한 일정한 명예회복조치는 취해졌다고 생각되며, 새삼스럽게 사죄광고 게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나) 또한 C경찰서 담당자가 원고乙山秋男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실은 없다.

3. 당법원의 판단

1. 증거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경찰서는, 본건 홍보대응까지의 사이에 목격자인 소년 2명, 하루오, 헤이가와타로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수사를 진행,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2006년 8월 11일 헤이가와타로는 제1현장에서, 친구와 함께 가라오케에서 나왔을 때 다른 그룹의 하루오에 대해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고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으나 갑자기 하루오의 주먹이 날아들어 턱을 구타당했다.

(나) 헤이가와타로는 턱을 구타당하자 이에 분격하여 하루오를 부근의 제2현장에 유인한 후 1대1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2) C경찰서에 의한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후, C경찰서 부서장이 기자들의 개별적인 전화취재와 방문취재에 대응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장과 기자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오고 갔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기자가 제1현장을 포함한 사건의 전체에 관해, 본건이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부서장은 이를 긍정하면서 ‘이른바 다이만(たいまん)의 형태였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나) 기자가 제2현장에서 싸움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한 데 대해 부서장은 피해소년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다) 기자가 제2현장 상황에 관해, 집단적인 린치였는지를 질문하자 부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였다. 다시 말하면 다이만(たいまん)과 같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3)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에히메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본건홍보 대응에서 과오가 있었는지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2007년 2월 7일자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본건조사결과보고서」로 한다)를 작성했다.

본건조사결과보고서에는, C경찰서가 본건홍보 대응까지의 사이에 헤이가와타로가 제2현장에서 하루오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파악했고, 부서장이 기자들로부터의 개별적인 전화취재 및 방문취재 대응과정에서 집단폭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맨투맨’ 이었다는 것을 강조할 의도로, 다이만(たいまん)이라는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C경찰서가 파악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일부의 보도내용이 어긋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인정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본건조사결과보고서는, C경찰서의 수사결과가 제1, 제2현장에서의 사실관계를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촉시켜 두개의 사실관계를 일련의 현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적으로 본건사건을 두 소년에 의한 싸움에 기인한 상해치사사건으로 판단, 두 소년에 의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일관하여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경찰서의 홍보 대응에는 특별한 과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또한 부서장이 ‘마주잡고 싸웠다’는 표현의 사용이나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되었다’는 등의 설명을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총괄적으로 C경찰서는 객관적인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홍보 대응을 실시했고,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피해소년 유족의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나, 부서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수사결과와 본건에 관련한 일부 보도의 내용간에 착오를 초래한 점

은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를 기재했다.

(4) 에히메현 경찰본부 홍보담당자들은 2007년 2월 7일 원고 아이키오와 대리인 변호사 외 1명에 대해, 부서장이 홍보 대응을 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수사결과와 보도내용 사이에 착오를 일으키게 된 데 대한 설명을 했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5)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본건조사결과보고서를 보도관계자들에게 공표하는 동시에 부서장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 유족에게 사죄하였음을 설명했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 결과 동월 8일자 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및 동월 9일자 마이니치신문에 상기 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각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재되어 있었다(일부 생략).

(가) 에히메신문

“보고서에 의하면 가해소년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받는 싸움』이라고 보도된 것은 C경찰서의 홍보책임자가 『1대1의 싸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다이만(たいまん)이라는 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냥 피해소년이 현장에 끌려가기 전에 가라오케에서 가해소년을 구타했다는 것 때문에 사건이 싸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현 경찰서 홍보과장이 유족에게 불친절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대해 사죄했다.”

(나) 아사히신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C경찰서는 당시 수사결과 고교생이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일부 보도기관에서는 고교생이 마츠야마시내의 현장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장소에 두 사람만 있었다는 의미로 다이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다이만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의 사용으로 수사내용과 일부 보도에 착오가 생기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다) 마이니치신문

“동위원회는 7일 조사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했다. 싸움이라는 발표에는 과오가 없었으나 일부 부적절한 설명내용이 있었고,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은 경찰서에 대한 에히메현 경찰본부의 지도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고 현경찰은 유족에게 사죄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교생은 마츠야마 시내의 현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그 전에 근처의 가라오케 앞에서 소년그룹의 한사람으로부터 머리를 쥐어 박혔을 때 턱을 때렸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를 『싸움』이라고 설명한 것은 과오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대의 싸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다이만이라는 용어로 설명했기 때문에 보도에 사실과 엇갈리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고 한다.”

(라) 요미우리신문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7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유족에게 전했다. 발표에 의하면 하천부지에서의 폭행에 대해 기자들에 대한 C경찰서의 설명은 1대의 싸움을 의미하며, 다이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되어 있다. 현경찰은 같은날 유족에게 지도가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마) 산케이신문

“에히메현 경찰은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이 있었으며, 부서장에 대한 지도와 교양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현경찰에 의하면, 사건 당시 보도대응을 한 경찰서 부서장은 집단폭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기자들에게 1대의 싸움이라는 의미의 다이만이라는 속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동 경찰서가 파악한 사건의 내용과 보도의 내용이 달랐다고 했다.”

여부에 대하여

(1) (가) 원고들은, C경찰서에 의한 본건홍보대응을 받고 본건보도가 이루어진 결과, 하루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본건보도가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민법723조에 규정된 ‘명예란 사람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며, 명예훼손이란 상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특정신문의 기사 게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기사에 대한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석한 의미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고재판소 1954년(가) 제634호, 동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나) 이를 본건보도에 비추어 보면, 본건보도는 모두가 제목에서 ‘싸움으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도 고교생끼리 싸움을 하여 고교2년생이 사망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바 (전기전제사실(5)), ‘싸움’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서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하루오가 사망한 이상 유형의 힘이 행사되었음은 명백하며, 일반독자가 고교생끼리 싸움을 하여 한쪽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경우, 실제적으로는 하루오가 제2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그 결과 부상을 입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하루오가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며, 하루오 자신에게도 그 사망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본건보도의 일부는, 고교생끼리 ‘치고 받는 싸움’ 또는 ‘1대의 싸움’을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제사실(5)(가), (다) 및 (라)), 이러한 표현은 일반독자가 상기와 같은 해석을 하게끔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반독자가 고교생끼리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것 등을 이유로 오후 6시 30분경 제2현장에서 ‘싸움’ ‘치고 받는 싸움’ 또는 ‘1대의 싸움’을 했

2 쟁점 1 (본건홍보대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다는 기사를 읽었을 경우(전기전제사실(5)), '싸움' '치고받는싸움' 또는 '1대1의 싸움'이라는 행위자체의 의미까지 더해져, 두소년이 고교생이라는 점, 싸움이 있었던 시간, 장소 및 싸움의 단서가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일반독자는 하루오가 싸움질을 하는 인물이며 불량소년이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본건보도는, 하루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더욱이 본건보도는 한결같이 하루오의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나, 모든 기사들이 P군(郡) 또는 Q정(町)의 현립고교 2년생(16세)이라는 점까지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오가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인근주민들이나 하루오가 재적하고 있던 학교의 관계자 등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소년이 하루오라는 것이 용이하게 특정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익명보도는 본건보도가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상기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2) 이와 같이 본건보도에 의해 하루오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

(3)(가) 다음에는 본건보도와 관련하여 본건홍보대응을 한 C경찰서의 홍보담당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나) 본건보도자료에 대하여

본건보도자료에는 "피의자와 사자는, (중략) 싸움을 한 결과 사자가 부상하여"라는 기재가 있는데(전기전제사실(3)), 전기와 같이 '싸움'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유형의 힘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보도기자가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으로 상기 기재를 읽는다면 사실과 다를 것이며,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싸움이 되어 그 과정에서 하루오가 부상을 당해 사망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싸움'의 일반적 의미 및 본건보도자료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본건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C경찰서의 홍보담당자로서도 본건보도자료를 보도기관에 배포하면, 보도기관이 '싸움으로 사망'이라는 식으로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 쌍방이 서로 폭행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하루오가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는 오해를 일반독자들에게 주어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도하게 된다는 데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본건보도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C경찰서 부서장의 취재대응에 대하여

전기인정사실(2)(가), (다) 기재와 같이, 부서장은 본건이 일관되게 1대1 싸움의 구도였는지를 묻는 보도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를 긍정하고는 '말하자면 다이만(たいまん)과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으며,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집단적인 런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며 다이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제1현장과 제2현장을 구별하지 않고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며 다이만이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바, '싸움'이라는 용어는 전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쌍방의 유형의 힘이 행사되는 싸움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이만이란 불량소년들 간에 통용되어 온 1대1의 싸움이나 결투를 의미하는 속어로 1대1로 치고 받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의 보도기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용어의 이해력을 가지고 부서장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의자와 사자는, (중략) 싸움을 하여 그 결과 사자가 부상하였다"는 본건보도자료의 내용을 읽으면, 제2현장에서 상황에 대해,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가 1대1의 싸움을 하여 그 과정에서 하루오가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다이만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보도기관이 제2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치고받는 싸움" 및 "1대1의 싸움"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할 것이라는 데 대해 충분히 예견

할수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제2현장에서 치고받는 싸움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도기자들에 대해서만, 피해소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회답을 하는데 그쳤으며, 다이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보도기자들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보도가 나가게 된 데 대해서는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가) 이상과 같이 부서장을 포함한 C경찰서의 홍보 담당자는, 보도기관에 대해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및 다이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기인정사실(2) 기재의 설명을 할 경우, 보도기관이 전체에 대해 '싸움(으로)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또한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싸움', '치고받는 싸움' 등의 표현으로 보도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및 상기와 같은 설명을 하여, 그로 인해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본건 보도가 나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들의 사자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홍보대응은 전체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건 보도자료의 보도기관에의 배포 및 부서장의 취재대응은, 에히메현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인 경찰담당자가 홍보대응이라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본건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1조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손해액

(A) 위자료 각 10만엔

본건 홍보대응에 의해 경애와 추모의 정이 침해되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본건 조사결과보고서의 공표 및 그에 관한 일련의 보도와 본건 상해치사사건의 형사판결에 의해 하루오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상당한 정도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본건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자 1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B) 변호사비용 각 1만엔

변호사비용은, 각 원고에게 위자료 액수의 10% 상당액인 1만엔으로 하는 것이 본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

(C) 계(計) 각 11만엔

3. 쟁점 2 (사죄광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제2현장에서 하루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보도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이만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보도기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싸움이라고 한 일부 보도에 유감을 표하는 본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루오의 조부인 원고 아키오 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4개 신문사 중 3개의 신문(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에히메현 경찰이 하루오가 제2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경찰서가 다이만이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 사죄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고, 다른 1개의 신문(요미우리신문)에서도 에히메현 경찰이 제2현장에서의 폭행과 관련하여 다이만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유족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본건 상해치사사건의 형사소송(마츠야마지법 2007년(㉔) 제146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제2현장에서의 하루오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싸움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공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 홍보대응에 의해 훼손된 하루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죄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가현재도 본건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하루오는 싸움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므로 본건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죄광고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는 하루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현장에서는 하루오도 헤이가와타로의 턱을 구타했으며, 그 후 헤이가와타로와 마주잡고 엉키는 등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하루오의 행위는 헤이가와타로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제1현장의 상황에 대해 싸움이라고 평가하여 본건상해치사사건이 싸움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을 반드시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2현장의 상황에서 하루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고 받는 싸움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하루오의 명예회복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원고들은, 본건보도대응이 C경찰서 수사담당자의 원고 아키오에 대한 반감에서 유래되었음을 근거로 사죄광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중상을 입은 피해소년의 유족이 수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올 틈이 있으면 하루 빨리 범인이나 잡으라”는 식의 난폭한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으며, C경찰서의 홍보담당자까지도 구태여 파악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다른 기자회견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기 주장은 결국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11만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8월 25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불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다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더욱이 가 집행선언의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 이를 기각한다.

■ 출처: 『판례타임즈』 No.1334호, 83~90.

■ 번역: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 사례]

언론사가 미성년자의 발언을 인용할 때는 충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신청인: Mr. Ravin Soobadoo

인용된조항: 1, 6조

언론사: Wanstead and Woodford Guardian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년 7월 13일자 Wanstead and Woodford Guardian이 “포르노 배우 출신 교사, 사퇴”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뷰를 실으면서 신청인 딸의 발언이라고 잘못 인용하였고, 게다가 딸이 12학년(16세 이상)이라고 틀린 정보를 기재하는 등 PCC의 윤리강령제1조(정확성)와 제6조(미성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보도는 전직 포르노 배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교사가 교직을 물러나게 되었다는 취지였으며, 실제 14살인 신청인의 딸을 12학년이라고 표기하면서 “선생님이 성(性)에 대해 적나라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곤 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신청인은 딸이 언론사에 그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으며, 또한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12학년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항의 이후 온라인 기사에서 해당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신청인의 딸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에 언급된 인터뷰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딸이 그러한 메일을 언론사에 보낸 바 없고 딸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언론사가 보도 이전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신청인의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사 주장

기자는 문제의 교사가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인의 딸이 12학년(16세 이상) 학생일 것이라 생각하고, 신청인의 딸이 보낸 메일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의 항의 이후 즉시 기사를 수정했고, 학교와 관련하여 취재할 때 인터뷰 방식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해당 메일을 보낸 것이 신청인의 딸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언론사가 신청인의 딸을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므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정

불만제기내용을 인용한다.

결정이유

신청인의 딸이 실제 메일을 보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언론사는 취재당시 딸이 보낸 것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CC는 기사의 전체 취지를 감안할 때 언론사가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우려를 감출수 없다. 보도 이전에 학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CC의 윤리강령제6조는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미성년자를 인터뷰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PCC는 이 건의 경우 언론사가 해당 학생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교사에 대한 매우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결국은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코멘트는 결국 신청인 딸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PCC는 언론사가 보도 이전에 학생의 나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랬더라면 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기가 더 용이했을 것이며, 부모의 동의 없이 보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학생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게재하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언론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학교에 대한 기사에서) 코멘트를 인용할 때의 취재방침을 새로 정했다는 점은 높이 산다.

[호주 사례]

범죄 의혹 보도 후 무죄로 밝혀져 후속보도가 이뤄진 경우라도, 최초 기사에 무죄로 드러났다고 주석을 달고, 후속 기사를 링크시켜야 한다

평결번호: No.1486

신청인: Michael Corkill

언론사: The Courier-Mail

AFC(Australian Press Council)는 퀸즈랜드의 범죄부정 척결 위원회(CMC)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한 The Courier-Mail의 보도에 대한 신청사건을 처리했다.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년 3월 26일자 CMC, 시장의 고문에 대한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이 「채널 7」의 Michael McKinnon을 만나 신청인의 이메일 일부에 대해 정보통제권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한 McKinnon이 브리스번 의회의 감사실에 '이런 일은 시의 RTI 담당자가 해야 하는 일 이었다며 제보했고 해당 건은 CMC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공인이 아닌 이상 CMC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도해야 한다면, 고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 제기되면 규정상 원래 CMC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는 조항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과 McKinnon이 The Courier-Mail의 직원으로 함께 일했었다는 점을 보도했어야 하며, McKinnon이 The Courier-Mail에 글을 쓰고 있고 편집국장인 David Fagan 부부와 친분이 있으므로 언론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항의했다.

신청인은 또한 2010년 8월 '시장의 고문, 혐의 벗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CMC의 결정을 인용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RTI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려 한 것 뿐이었다"는 더 명백한 취지의 문장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또한 신청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견책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단순히 업무를 잘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일 뿐인데 시의회가 부당한 비난을 받게 하는 상황까지 갔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시장의 발언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CMC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신청인

이 공인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신청인과 McKinnon이 어떤 사이인지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McKinnon이 편집국장과 친한 사이도 아닐뿐더러 설사국장의 부인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시장의 고문, 혐의 벗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의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첫 번째 기사와 달리 두 번째 기사는 신청인의 항의 이후에야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언론사는 온라인 기사 게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결정내용

APC는 신청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CMC가 조사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고문인 신청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규정에 따라 CMC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보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청인과 Michael McKinnon의 개인적 관계는 명백한 사실도 아니며 위원회 윤리강령 중 공정성이나 이해관계 조항의 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APC는 두 번째 기사('시장의 고문 혐의 벗다')가 공정성과 균형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CMC 결정내용을 더 상세히 언급했어야 하며 또한 견책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장의 발언도 함께 적시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언론사는 첫 번째 기사에 신청인이 무죄로 드러났다는 점을 주석으로 달고, 두 번째 기사를 링크시켜야 한다.

추가사항

신청인은 첫 번째 기사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이 실제보다 늙어 보이고, 자신의 성앞에 "Mr"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 등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어떤 차별도 없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부정했다. APC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질랜드 사례]

부정확한 단어로 인용했으나, 실제 맥락을 볼 때 유사한 의미라면 언론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No.2160

신청인: Robin Grieve

언론사: New Zealand Herald

개요

신청인은 2010년 10월 9일 토요일자 New Zealand Herald에 실린 칼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Weekend Herald지의 논설위원 Paul Thomas는 Paul Henry가 자신이 진행하는 TV쇼에서 했던 우스갯소리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Paul Henry가 이전에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는 발언을 여러 개인용하고, TVNZ가 Henry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불공정하며 현저히 균형을 잃은 기사라고 주장했다.

결정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다.

신청내용

신청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Paul Henry의 이미지가 매우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인은 "Paul Henry가 한 스코틀랜드 여성(Susan Boyle)에 대해 저능아(retard)라고 표현했다"는 기사 내용을 문제삼았다.

신청인에 따르면 Henry는 '저능아(retard)'가 아니라 '지능이 떨어진다(retarded)'고 표현했으며, 지능이 약간 뒤쳐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정확한 용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누군가를 저능아(retard)라고 일컫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표현이라고덧붙였다.

신청인은 언론사에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언론사가 'retard' 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정정보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언론인이라면누구나 두단어의차이를 알아야 한다. retard는부적절한표현이고, 반면retarded는 지적인장애가 있는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가아니다.”라고주장했다.

언론사주장

언론사는 “신청인은 두 단어 중 retard는 모욕적인 어감을 갖고 있고, retarded는 그렇지 않다면서 두 단어의 차이점을 주장한다”면서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둘 다 비판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라고 주장했다. 두 단어간 식별 가능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retarded' 가 더 모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Henry가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수를 비웃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HRC)와 방송윤리위원회(BSA)에서 Henry의 발언이 강령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방송윤리위원회에서는 시청자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조롱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론

신청인은 언론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 Mr. Henry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retarded”보다는 “retar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두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살펴보면, 해당 기사가 의견 기사로서는 설위원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은 기사를 접하는 독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Mr. Henry는 실제 “retard”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해당 기사는 “retard”라고 인용했지만 두 개 단어 모두 Mr. Henry가 실제 단어를 사용했던 맥락을 살펴볼 때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뉘앙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신청은 기각되었다.

[아일랜드 사례]

슬픔에 잠긴 시간에 대해 보도할 때는 신중함과 연민이 필요하다. 보도의 시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건번호: Nb.2160

신청인: A Woman (한 여성)

언론사: Irish Daily Star

개요

한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한 보도에 대해 유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으며 윤리강령 5조(프라이버시)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가족을 대표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옴부즈맨(Press Ombudsman)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공인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중에 결국 자살했다. 신청인은 언론사가 유족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취재 요청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기사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정정과 함께 유족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였고, 이 사건이 한 인간의 극도로 어려운 상황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여실히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 이전에 신청인을 취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언론사는 신청인이 몇 년 전에 아버지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였던 사실을 들었다.

결정내용

언론사가 이러한 비극적 사고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으나 윤리강령 5조의 3항은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신적인 문제나 자살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유족을 충분히 배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과 직장명을 공개한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신청인의 직장 웹사이트를 토대로 얻은 정보이므로 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기사 중 부정확한 부분을 즉시 정정, 수정함으로써 언론사가 충분히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는 옴부즈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에 상정되었다.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결정

신문평의회는 해당 보도가 강령 5·3조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언론사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신문평의회는 강령의 해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언론사의 보도가 주요 부분에 있어 진실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무성의하게 다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망 이후 게재된 보도의 시점 때문에 괴로웠을 수 있으나 언론 보도의 시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의회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언론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기로 결정했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강승묵(2010).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7집 4호, 187~213.
- 강학주(2011. 2. 25). 소셜미디어와 비즈니스모델 서울디지털대학교, 한국언론학회주최 ‘소셜미디어와 광고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발제문.
- 권상로(2010).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집 3호, 81~101.
- 김정환(2011. 1. 18). 정부주도의 일본-융합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발제문.
- 김민하·신윤경(2011). 전문기자화 시민기자블로그 콘텐츠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3호, 73~99.
- 김상훈(2011. 1. 24). 미디어랩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언론학회주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정책 방향’ 세미나발제문.
- 김서중(2011. 1. 13). 미디어법 통과이후 언론현실의 변화와 전망.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 ‘미디어공공성포럼2011년도워크숍’ 발제문.
- 김성해·심영섭·유용민(2011. 3. 26). 글로벌 공론장, 이상과 현실: 그리스 위기를 통해서 본 집단지성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학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신화와 현실’ 세미나발제문.
- 김성환(2011. 1. 26).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시장의 획정. 한국방송학회, 여의도클럽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발제문.
- 김수정·정연구(2011). 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3호, 5~28.
- 김영식·유제설(2011). 4P모델 분석을 통한 경찰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1호, 340~349.
- 김정현(2011).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경원법학』, 3권 3호, 87~112.
- 김지영(2011. 2. 25). 소셜미디어와 UCC. 서울디지털대학교, 한국언론학회주최 ‘소셜미디어와 광고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발제문.
- 문철수·서범석(2011. 1. 24). 미디어랩 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미래. 한국언론학회주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정책 방향’ 세미나발제문.
- 박종민·최서경(2011). 합법적 고객이익추구 VS. 공중에게 진실한 정보제공.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04~336.
- 박진우(2010).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경원법학』, 3권 3호, 51~86.
- 설원태(2011. 3. 26). 정상회담과 언론: 한미 언론에

대한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언론의 국적, 한국 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신화와 현실' 세미나발제문.

- 심영섭 (2011. 1. 18). 분권화된 거버넌스하의 독일 융합정책.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 과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
- 양승목 (2011. 1. 28). 스마트미디어환경도래와 뉴스 미디어의 미래.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출범1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 양윤직 (2011. 2. 25). 소셜미디어와 광고. 서울디지털 대학교, 한국언론학회주최 '소셜미디어와 광고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발제문.
- 양재규 (2010. 12). 법을 알고 기사쓰기 57 - 기소 전 보도와 단정적 표현은 자제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480호, 100~103.
- 양재규 (2011. 1). 법을 알고 기사쓰기 58 -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신문과 방송』, 통권481호, 76~80.
- 양재규 (2011. 2). 법을 알고 기사쓰기 59 - 공인가족의 사생활공개, 공적 영역과 직접 관련 되는 것에 한정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482호, 78~81.
- 양재규 (2011. 3). 법을 알고 기사쓰기 60 - 사소한 왜곡이라도 의도개입되면 문제될 수 있어. 『신문과 방송』, 통권483호, 76~79.
- 오대영 (2011). 한국과 일본신문의 한일강제병합100주년 뉴스프레임 차이 비교. 『한국언론학보』, 55권1호, 140~168.
- 원용진 (2011. 3. 4). 다른 시각에서 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공적 가치. 한국방송학회주최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발제문.
- 유승훈 (2011. 1. 26).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및 방송광고 규제완화. 한국방송학회, 여의도클럽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발제문.
- 윤석민 (2011. 3. 4). 다채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송 공공성 이념의 모색. 한국방송학회주최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발제문.
- 이규완 (2011. 1. 20). 미디어 빅뱅시대 공영미디어랩의 역할과 발전 방안. 한국방송광고공사주최 '공사창사 30주년기념 특별세미나 - 스마트시대의 광고산업 발전전략' 발제문.
- 이상훈 (2011. 1. 18). 프랑스 미디어 산업정책과 공공정책의 균형잡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발제문.
- 이진로 (2011. 2. 11). 지상파, 종편시대의 미디어랩 해법.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정책포럼주최 '2011 미디어랩 해법에 대한 특별세미나' 발제문.
- 이현주 (2011. 3. 26). 뉴미디어 혁명과 뉴스이용양상의 변화: 국가간 뉴스소비행태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신화와 현실' 세미나발제문.
- 임봉수 · 이완수 (2011). 뉴스를 통합이 저널리즘수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3호, 29~52.
- 장경찬 (2011. 1. 15). 조정인의 역할. 한국조정학회주최 '제6회 학술대회 - 조정인의 역할과 성공적 조정기법' 발제문.
- 정덕현 (2010). 연예인의 프라이버시, 공적인가 사적

인가. 『서울法學』, 18권2호, 1~23.

- 정상조 (2010).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2009.4.16. 선고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1권 2호, 229~272.
- 정용준 (2011. 3. 4). 방송 공익성 이념의 역사적 비교 분석. 한국방송학회주최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정준희 (2011. 1. 18). 디지털 영국 구현을 위한 공공-시장의 정책적 조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 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
- 조영신 (2011. 1. 18). 미국 방송 통신규제체계 및 산업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 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
- 조흥준 (2011. 1. 15). 조정사례와 성공적 조정기법. 한국조정학회주최 '제6회 학술대회- 조정인의 역할과 성공적 조정기법' 발제문.
- 주정민 (2011. 1. 26). 스마트미디어 시대 미래지향적 방송통신정책의 재편방향. 한국방송학회, 여의도클럽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 발제문.
- 지성우 (2011. 2. 11).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는 미디어 랩 해법.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정책포럼주최 '2011 미디어랩 해법에 대한 특별세미나' 발제문.
- 한선 · 이오현 (2010. 11). 지역신문 기자의 작업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8권4호, 2~36.
- 허만섭 (2010) 언론중재제도의 '국가기관반론권' 과 보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6호, 315~343.
- 황주성 (2011. 1. 18). 세계주요국의 컨버전스 동향과 한국의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 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